

8. 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中 改正令 (案)立法豫告

자료제공 :재정경제원공고제 1997-118호 1997. 12. 4.

개 정 이 유

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증권시장 안정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 요 내 용

- 가.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업종에 폐기물처리업 및 상품디자인업을 추가하고, 동 준비금의 사용기준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비용에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체제인증 획득비용을 추가하도록 함.
- 나. 투자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고 신탁

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을 신탁설정일로부터 6개월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규정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 함.

- 다.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국제선박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후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

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함.

- 라.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금융부채는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부채총액을 한도로 하고, 부동산 양도후 5년간 금융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비율에 상당하는 면제세액을 추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.
- 마. 기업분할에 의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던 것을

앞으로는 현물출자시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,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함.

- 바. 불입액의 5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재산의 80퍼센트 이상을 주식으로 운영하는 신탁계약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고 1인 1개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함.
- 사.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의 범위를 소매업, 음식점업 및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함.